

# 배출업소 지도점검 위반사례

2016. 11. 22



## 환경부

# ●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 규정



규정	조문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악취방지법	제17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전체



# 배출시설 관리변천 현황



시기구분	기간	지역구분	관리권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1기 (분권화)	1984년 이전	전지역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2기 (제한적 분권화)	1984.3- 1986.11	주요 공단 사업장 공단 외 1-3종 사업장	지도단속	허가, 행정처분
		그 외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3기 (집권화)	1986.12- 1991.1	공단 내 사업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공단 외 1-3종 사업장	지도단속	허가, 행정처분
		공단 외 4-5종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1991.1- 1992.6	공단 내 사업장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공단외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4기 (분권화)	1992.7.- 1994.4	전 지역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5기 (이원화)	1994.5.- 2002.10	국가, 지방공단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공단외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6기 (재분권화)	2002.10- 현재	전 지역 사업장		허가, 지도단속, 행정처분

## ● 배출시설 현황 (15년 기준, 단위 : 점검시설수)



구분	총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전국	<b>66,656</b>	2,143	2,076	3,532	<b>12,956</b>	<b>45,949</b>
경기도	21,509	564	686	1,076	4,147	15,036
(대기)	10,747	383	315	481	3,340	6,228
(폐수)	10,762	181	371	595	807	8,808

## ● 지도점검대상 배출업소 현황 (15년 기준, 단위 : 업소수)

구분	총계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전국	<b>45,257</b>	15,610	18,128	11,519
경기도	15,223 (33.6)	6,030 (38.6)	5,607 (30.9)	3,586 (31.1)

# 15년도 지자체 지도점검 실적 (단위 : 시설수)

구분	배출 시설수 (대기+ 폐수)	점검 시설수 (점검율%)	위반 건수 (위반 율%)	위반내역				조치내용					
				기준 초과	비정 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폐쇄 명령	경고 등	순수 고발 (병과)
전국	45,257	66,426 (146.8)	5,404 (8.1)	1,353	491	1,024	2,536	1,307	463	708	272	2,583	71 (1,159)
경기	15,223	21,509 (141.3)	1,783 (8.3)	292	132	555	804	281	140	419	117	793	33 (673)



# ● 중앙환경기동단속반 지도점검 실적



- 환경기동 단속('13년, 4회, '14년 5회, '15년 8회, '16년 5회) 총 18회 1,338개소 점검  
561개소 적발(적발률 41.9%)

연도별	단속기간	단속 분야	적발업소수/점검업소수 (위반율 %)
2013	'13.5.13~5.15	폐수 수탁처리업체	10/17 (59)
	'13.5.20~5.22	공공 하수종말처리장	4/10 (40)
	'13.9.9~9.13	하절기 녹조예방(악성폐수)	30/71 (42)
	'13.11.27~12.3	수질TMS 설치사업장	13/37 (37)
2014	'14.2.24~2.28	폐수 다량배출업소	14/47 (30)
	'14.4.2~4.15	녹색기업	10/10 (100)
	'14.6.26~7.7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9/10 (90)
	'14.7.30~8.14	토석채취사업장	25/30 (83)
	'14.10.15~10.21	폐수수탁, 고농도 폐수	18/26(69)

# ● 중앙환경기동단속반 지도점검 실적



- 환경기동 단속('13년, 4회, '14년 5회, '15년 8회, '16년 5회) 총 18회 1,338개소 점검  
561개소 적발(적발률 41.9%)

연도별	단속기간	단속 분야	적발업소수/점검업소수 (위반율 %)
2015	'15.2.4~2.10	김포 거물대리 배출업소 특별단속	62/86(72)
	'15.5.18~5.22	계획관리지역(충북 음성,진천) 특별단속	9/25(36)
	'15.6.1~6.12	2분기 환경기동단속 정상화과제 추진	40/150(26)
	'15.7.15~7.17	계획관리지역 (경북 경주)	8/22(36)
	'15.7.27~7.31	오.폐수 다량배출시설	19/95(20)
	'15.9.8~9.11	계획관리지역(경남 김해)	16/46(35)
	'15.10.12~10.23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32/100(32)
	'15.11.9~11.27	건설폐기물 처리업 특별단속	6/10(60)

# ● 중앙환경기동단속반 지도점검 실적



- 환경기동 단속('13년, 4회, '14년 5회, '15년 8회, '16년 5회) 총 18회 1,338개소 점검  
561개소 적발(적발률 41.9%)

연도별	단속기간	단속 분야	적발업소수/점검업소수 (위반율 %)
2016	'16.2.15~2.24	'16년도 1분기 환경특별기동단속	27/80(34)
	'16.4.18~4.29	'16년도 2분기 환경특별기동단속	93/168(55)
	'16.6.7~6.24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37/99(37)
	'16.3.2~6.20	재생연 제조업체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	11/16(69)
	'16.10.11~10.28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68/183(37)



# 지방청 환경감시단 지도점검 실적 (14,15년)



단 속 업소수		적 발 업소수 (적발률)	적 발 내 역					고발대상		
			계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기타	계	고발	자체 수사
'14년	7,594	2,128 (28.0)	2,168	209	253	222	1,484	823	44	579
'15년	5,589	1,694 (30.3)	1,694	162	181	272	1,079	548	117	431

※ 최근 3년간 점검현황 (매년 증가추세)

. 점검업소수(개소) : 7,870('11) → 8,943('12) → 8,449('13) → 7,594('14) → 5,589('15)

. 적발업소수(개소) : 1,717('11) → 2,375('12) → 2,442('13) → 2,128('14) → 1,694('15)

##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를 통한 주민건강 보호

환경오염 예방 및  
긴급 조치 기능

쾌적하고 맑은 환경  
안전한 상수원 관리

환경사범의 감시  
수사 기능

- ※ 배출시설 단속권 등 관리업무 지자체 위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및 국민의 안정적 생활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능 수행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점검 실시

## ※ 참고사항 (주요 지도점검 사항)

- ① 폐수, 대기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② 폐수, 대기 방지시설 가동실태(시료채취 포함)
  - 오염물질 포집부 후드위치 임의변경, 흡착제.흡수액 적정교환 등
- ③ 폐수 무단배출.희석배출(배관설치 포함) 운영 여부
- ④ 물질수지(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적정여부
  - 허가 받은 희석수 사용량 포함
- ⑤ 폐수처리관련 슬러지 발생량, 약품 사용량, 수탁폐수량 등



- 수질, 대기 자동측정기기(TMS) 적정가동 여부(원격명령시행)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 억제시설 설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대상 신고, 발생억제시설 설치여부
- 폐기물 적정보관상태(혼합보관, 보관기간 초과 등)
- 지정폐기물 배출계획 확인(폐드럼), 올바로시스템 입력관련
-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

## 수질에 관한 주요 불법사례

- **폐수무단배출(식품세척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로 배출)**  
**폐수처리와 무관한 배관설치(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  
**폐수희석처리(공정과 무관한 물을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고발(5년, 3천 만원) / 조업정지(10일) / 배출부과금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30/100% 이상 증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제2항, 규칙 제50조  
⇒ 고발(1년, 1천만원) / 조업정지
- **가동시작신고 미이행(설치신고 일부시설, 미생물 활성화 방지시설 운영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 고발(5년, 3천 만원) / 경고
- **수질 TMS 조작(교정값 조작, 측정범위 제한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 고발(5년, 3천 만원) / 경고





미신고 배출시설(금속제품제조- 절삭가공)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무단방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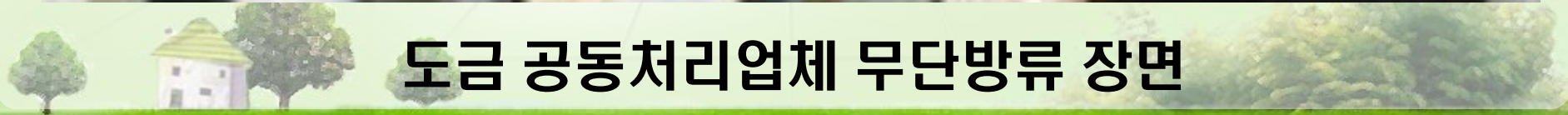


**녹색기업 우수로 (절삭유로 인한 오염) 장면**



**전자제품 제조업체 무단방류 장면**





도금 공동처리업체 무단방류 장면



**도금업체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하는 장면**





1차금속 제조업 침출수 오염 장면





**제 1침전조에는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함**





**폐수배출시설(stack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자바라) 설치**





**폐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최종방류구로 무단방류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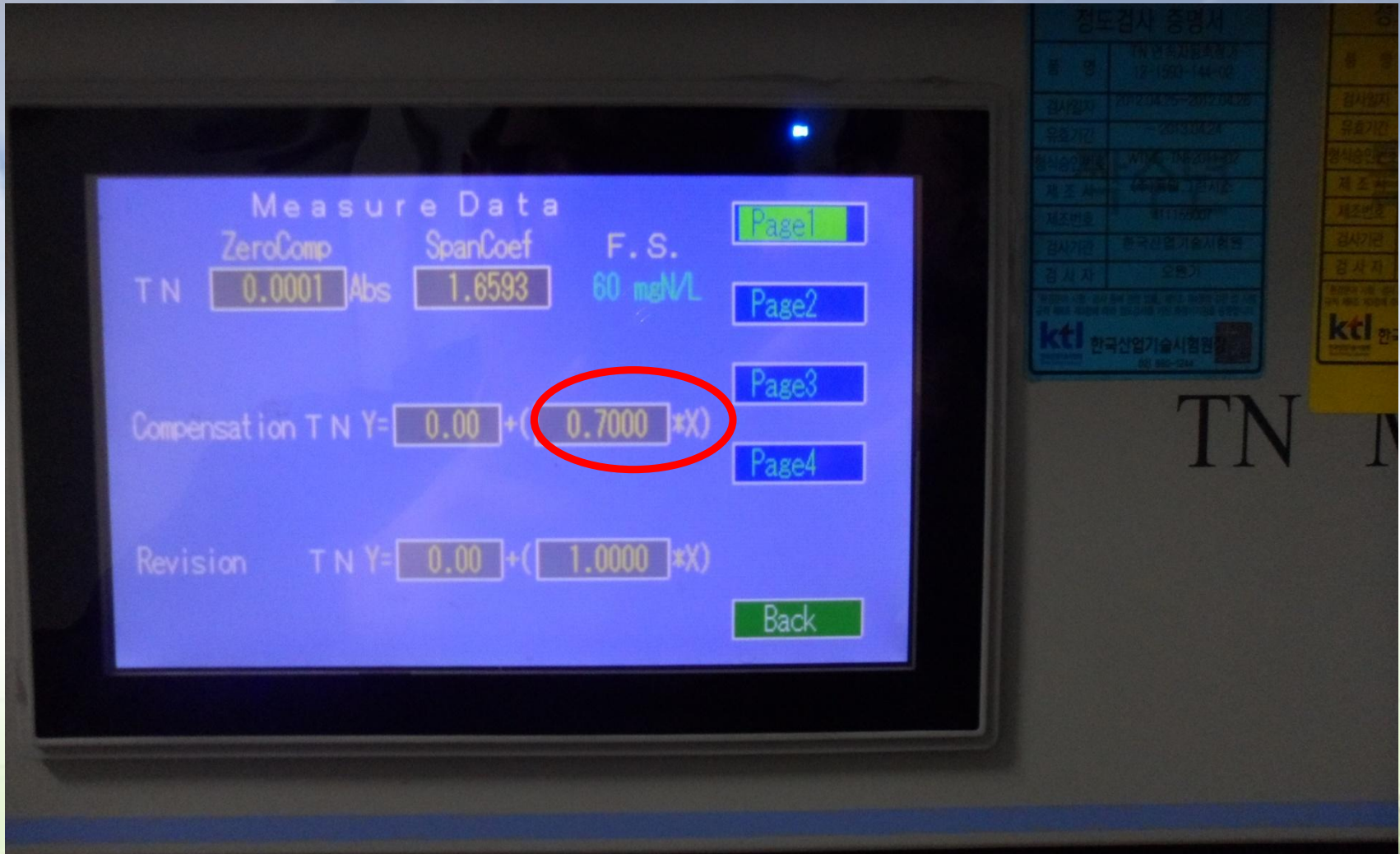


**최종방류조에 상수도로 희석하는 장면(침전조, 방류조 채수)**

시료 주입 시간 [sec]	250.0
측정단계시 측정 주기 [min]	20.0
시험 전류 측정 시간 [sec]	100.0
교정 및 검증단계시 측정 주기 [min]	15.0
000 측정값의 평균횟수	1
000 측정값의 보정 Factor	0.80
센서 신호값 계산 시간[sec]	800.0
000 측정값 경계 농도 설정(mg/L)	200.0
측정값의 변동 오차 설정[치]	50.0
검정단계시 선형성 오차 설정 [치]	95.0

**TMS 기계조작 : COD 보정값 임의 변경(기울기 0.8)**





**TMS 기계조작 : TN 보정값 임의 변경(기울기 0.7)**





## 대기관련 주요 불법사례

-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세정수 공급펌프 파손으로 세정수 미 공급)**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 고발(7년, 1억원) / 조업정지(10일) / 개선명령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고형보일러 500 kg /시간 1기 임의증설)**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 고발(5년, 3천 만원) / 사용중지.폐쇄명령
-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방지시설 배관 훼손, 송풍기 펌프 등)**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
  - ⇒ 과태료(200만원) / 경고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 고발(300만원) / 과태료(60만원). 경고



**세정집진시설 내부 장면(세정수 미공급)**



**여과 집진시설 내부 장면(여과포 막힘, 일부 제거)**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망, 방진덮개 등) 미설치**



## 폐기물관련 주요 불법사례

-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기물 유출로 주변환경오염)**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 ⇒ 고발(2년, 2천 만원)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폐유 등 처리 실중량 미기재)**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4항
  - ⇒ 고발(2년, 2천 만원)
- **폐기물처리 전자정보프로그램 허위기재(폐드럼 처리량 임의환산 기재)**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 ⇒ 고발(2년, 2천 만원)
-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보관기간 초과, 혼합보관,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등)**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 ⇒ 과태료(1,000만원)





**주조공정 발생 폐주물사(약 1톤) 사업장내 우수로에 적체**





**화학 폐기물 부적정 처리(고물상) 장면**





**화학약품 폐기물 부적정 보관 장면**



## ※ 16년 달라지는 법령 주요내용

- **화학물질 관리법(화평법, 화관법) 전면 개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조 수입, 취급량 공개)
  - 화학물질 관리법(매출액(2.5 -5%) 기준 과징금, 장외평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 대기배출시설 (탄화시설 : 숯가마 30세제곱, 전동 숯가마 150세제곱)
  - 석유 정제시설의 저장시설(50세제곱 이상), 보일러 (2톤이상) 가스, 경질유 포함, 도장시설(3마력, 5세제곱)은 전체 시설로 확대
  - \* 2015.12.31일 까지 설치허가(신고)
- **통합환경관리 제도 시행('15.12.22 법률제정, '17.1.1시행)**
  - 대상 : 환경영향이 큰 업종 대기, 수질 1,2종 사업장



IV

## 향후 배출업소 관리방향

- 행정절차적 규제는 최대한 개선 하되,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
- **중앙기동단속반 운영 활성화, 환경감시단 기능.인력 확대**
- **위반사업장 언론공개 등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예방**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환경감시 시행**
- **배출업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모바일 인터넷 기반)**



## ※ 참고, 당부사항

- **법 목적, 오염행위와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절차 위반행위**
  - 폐수 희석처리, 폐기물 부적정 보관(보관기일), 운영일지 등
- **환경감시단의 설립 목적 및 단속근거**
  -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법령 등의 보고 검사 규정(환경부장관)
  -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특사경 관련법
- **중복단속 최소화 방안**
  - 분기별 단속현황 공유, 합동단속, 현안사항 적극 협조 등

## ❶ 불합리한 질의 회신 사례 개선

- 법령 적용의 형평성, 적법성 고려

## ❷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내용

- 폐수 불법배출 관행근절, 하수처리장 정상화(TMS 불법 조작 근절)
- 하수처리장 유입수 (COD) 30% 저감목표(김천, 안산, 인천)

## 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성형시설, 농수산물 가공시설

- 미신고 배출시설의 50% 이상, 계획관리지역 다수 분포



# ● 환경부 환경감시관의 역할



## 환경부 환경감시관의 역할

- 환경감시관은 환경의 지킴이로써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자부심 고취**
- 환경오염사고 예방 역할뿐만 아니라, **오염사고시 긴급 방제 및 원인 규명의 결정적 역할 수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감사합니다!!**

